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년월일 : 2016. 5.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51,122천원으로서, 이중 3건에 540,65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

	계(3건)	540,650천원
○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장비구입		124,000천원
○ 봄가뭄대책 영농지원		116,650천원
○ 가뭄지속화에 따른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식수난예상 취수원 확보		300,000천원 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